

1. 예산 총 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33,107,115	18,993,213
일반회계	583,622,270	17,508,668
특별회계	49,484,845	1,484,545
기타특별회계	49,484,845	1,484,545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5,939,029	178,171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3,528,343	105,850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260,900	7,82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40,000	19,20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595,449	137,863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58,155	25,74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2,415	19,57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085,411	152,562
수질개선특별회계	23,905,143	717,154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4,020,000	120,600

제 2 조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37,462,378천원이며, 재해·재난 예비비 31,062,378천원을 포함한다.

제 6 조 202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1,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